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수정(저소득층 인정 범위)

1. 관련 :

가.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수정 송부(일자리정책평가과-22호, '18.1.3)

나.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수정(일자리정책평가과-312호, '18.1.29)

2. 위 합동지침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저소득층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부는 참여 희망자의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8.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역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혼합된 가구의 경우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에, <아래>과 같이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내용을 일부 개정하니, 직접일자리사업 시행 부처들은 <붙임> 개정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시고, 수행기관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적용시기 및 적용 대상 : '18.8.1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선발 대상자
- 변경사항 :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인정 기준 일부 변경,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자 참여 제한 사업 6개의 참여제한 기준 일부 변경

붙임.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일부개정.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 산림청장(산불방지과장), 산림청장(산림병해충방제과장), 행정안전부장관(지역공동체과장),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산업안전과장, 사회적기업과장, 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예술교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기반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애인체육과장), 교육부장관(교육일자리총괄과장),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장), 농촌진흥청장(지도정책과장), 농촌진흥청장(국외농업기술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기관지원팀장), 여성가족부장관(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가족지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노인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노인지원과장),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자립기반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아동권리과장),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사업과장),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산림청장(도시숲경관과장), 국가기록원장(수집기획과장),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장),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 환경부장관(자연공원과장), 여성가족부장관(다문화가족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장)

행정사무관 이상혁 일자리정책평가과장 편도인 노동시장정책 전결 2018.6.26. 관 박성희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평가과-1727 (2018. 6. 26.) 접수 지역공동체과-1890 (2018.06.26.)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231 팩스번호 044-202-8032 / leesh142@korea.kr / 대국민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